

인천광역시 영종국제도시 내 A-42BL 서한이다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개요

- 공급규모: 공공분양주택 지하2층~지상29층 9개동, 총 930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포함) 대상 세대수 : 총 133세대

주택형	타입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m ²)			배정호수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64.7600A	64A	186	64.7600	22.4598	87.2198	27	-
74.9600A	74A	163	74.9600	25.7243	100.6843	24	
84.9300A	84A	110	84.9300	28.7591	113.6891	16	
84.9300B	84B	235	84.9300	28.6091	113.5391	34	
84.9100C	84C	95	84.9100	28.7639	113.6739	13	
84.9100D	84D	85	84.9100	28.7439	113.6539	12	
84.9100E	84E	56	84.9100	28.7239	113.6339	7	
소계		930				133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화성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내역 (단위:세대)

구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64A		74A		84A		84B		84C		84D		84E		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국가유공자 등	9	27	8	24	5	15	11	33	4	12	4	12	2	6	43	129	
장애인	인천시	1	3	1	3	2	6	2	6	2	6	1	3	1	3	10	30
	서울시	1	3	1	3	-	-	1	3	-	-	-	-	-	-	3	9
	경기도	1	3	1	3	-	-	1	3	-	-	-	-	-	-	3	9
철거민	2	6	2	6	1	3	2	6	1	3	1	3	1	3	10	30	
장기복무 제대군인	2	6	2	6	1	3	2	6	1	3	1	3	1	3	10	30	
10년이상 복무군인	2	6	1	3	1	3	2	6	1	3	1	3	1	3	9	27	
의사상자 등	2	6	1	3	1	3	2	6	1	3	1	3	-	-	8	24	
북한이탈주민	1	3	1	3	1	3	2	6	1	3	1	3	-	-	7	21	
다문화가족 구성원	1	3	1	3	1	3	2	6	1	3	1	3	-	-	7	21	
우수선수	1	3	1	3	1	3	2	6	-	-	-	-	-	-	5	15	
우수기능인	1	3	1	3	-	-	2	6	-	-	-	-	-	-	4	12	
중소기업 근로자	2	6	2	6	1	3	2	6	1	3	1	3	1	3	10	30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1	3	1	3	1	3	1	3	-	-	-	-	-	-	4	12	
소 계	27	81	24	72	16	48	34	102	13	39	12	36	7	21	133	399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

II 특별공급 일정

■ 특별공급 일정계획 [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21.05.27(목)	일간신문 및 인천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홈페이지 (http://yj-seohan.co.kr/)
• 견본주택 개관	2021.05.28(금)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7-3 서한이다음 견본주택
• 특별공급 접수	2021.06.07(월)	인터넷 청약접수(08:00~17:30) 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1.06.17(목)	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자격 입증 서류 지참, 서류 별도문의)

III

특별공급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된 분

■ 청약통장 자격 요건(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아닌 자.(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3.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IV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1.06.07.)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1. 05. 27(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반드시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http://yj-seohan.co.kr>) 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시도



● 위치안내



※ 현 장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9-1



※ 건본주택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7-3

● 입지환경

10만평 공원이 집앞!
20분대 서울이 눈앞!

박석공원의 푸른 생활과 제3연륙교의 빠른 미래를 잇다



※ 본 홈페이지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 문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홈페이지의 제작과정상 오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